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43
----------	------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명희 의원 외 14명
- 나. 제안일 : 2017년 4월 5일
- 다. 회부일 : 2017년 4월 7일
- 라. 상정일 :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4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명희 의원)

가. 제안 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 및 명칭, 소재지, 임원 및 직원, 이사회, 사업 및 해산, 재산 및 회계 등과 같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관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조직, 인사, 재무 등 재단 운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19조제2항 후단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 명칭, 사업, 직제, 정원, 재산 및 회계 등 재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후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후단 신설).
- 「민법」¹⁾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²⁾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만 얻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변경이 설립목적과 시책에 합치하는지 여부 등 정관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서울시장의 승인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여짐.
-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물공사 등 공사·공단·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을 규율하는 조례(「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도 정관을 작성·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오고 있으며, 보고의 형식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관변경사항을 단순히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위반이나 시행 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정관 개정시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서울시 조례 내역>

	조례명	조항
1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4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 1) 「민법」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제6조제2항
8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9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1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1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12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1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1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1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17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본 개정을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적절한 통제나 견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관변경 사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사전적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나, 시의회 비회기 기간 중에는 정관 개정이 지연될 수도 있어 업무효율성이 다소 저하될 소지는 있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락.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후단 신설></u></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19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u>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